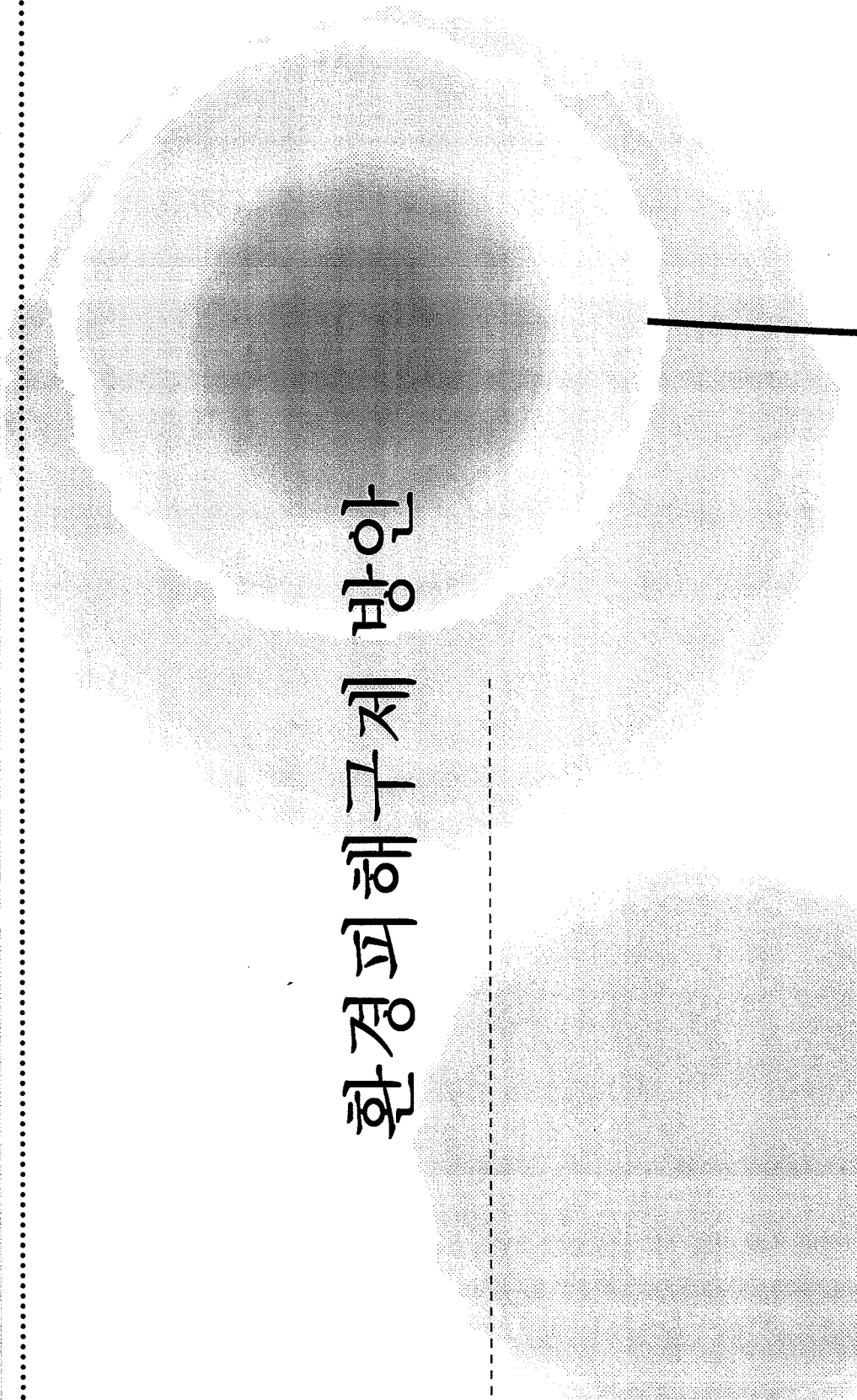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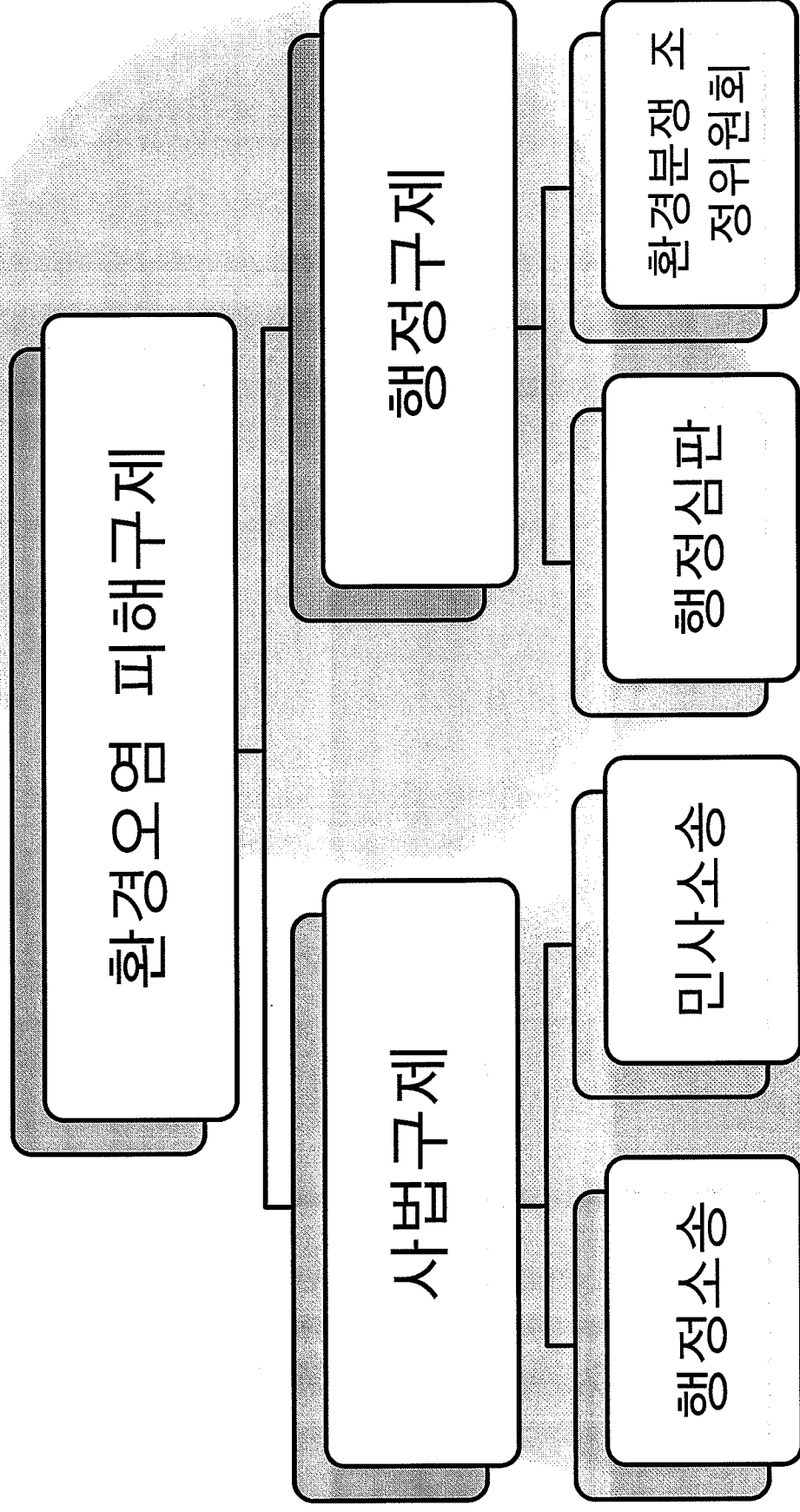




환경피해구제 방안

현행법상의 환경책임제도 : 일반적 책임



현행법상의 환경책임제도 : 일반적 책임

사범구제	
소송비용	재판과정에서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감정이나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됨
오염배출원 및 인과관계 입증	- 기업들의 어떤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 원고 주민들의 피해가 피고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것이라는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
위법성	피해 위법과 관련, 수인한도기준의 불명확성
배상액	- 인과관계 입증에 과도한 비용 소요 - 환경침해에 대해 개별적 피해의 정도 확정 어려움 - 배상액의 과소

현행법상의 환경책임제도 : 일반적 책임

행 정 구 제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당해 행정청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에 있어서 당사자간 다툼이 생긴 경우
		• 당사자의 불복 원인 첫째,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과 관련된 인식 차이 둘째, 가해자인 기업이 공해기업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셋째,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배상액의 수준을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현행법상의 환경책임제도 : 개별적 환경책임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법상의 무과실 책임

환경정책기본 법 제44조 제 1항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 토양오염피해
개별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	광업법(제75조)의 광해
	수산업법(제82)의 수질오염에 따른 어업피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1항)의 유류오염피해

현행법상의 환경책임제도 : 개별적 환경책임

문제점

-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들 상호간의 적용상 문제
 - 개별법이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법적 의미를 가진다면 마땅히 해당 개별법이 적용
-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개별 환경법상의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인 경우에 한정하여 법적 의미를 가짐
-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상의 조항들이 (단순)무과실책임조항인지 아니면 위험책임조항인지 그 구별이 불명확
- 따라서 개별적 환경책임법의 제정이 검토될 시점임

현행법상의 환경책임법제의 필요성

- 첫째, 법원의 판례입장은 입법으로 명문화되지 아니하여 법원실무에서 과실유무에 관한 예견가능성이라든지 인과관계에 관한 개연성 여부와 관련하여 소극적인 판결도 나올 수 있음
- 둘째, 위법성과 관련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역시 불명확
- 셋째, 피해의 확정과 관련하여 공공재로서의 환경침해에 대해서는 개별적 피해의 정도를 개인이 확정하기 어려움
- 넷째, 특히 이른바 환경오염의 遠隔損害나 累積損害의 경우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부담의 경감이나 책임이행의 확보 등과 같은 문제는 입법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

현행법상의 환경책임법제의 필요성

- 다섯째, 환경정책기본법과 이들 개별법들 상호간의 적용상 해석과 관련된 복잡성과 법체계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입법기술상 비효율적
- 여섯째, 개별적 환경책임조항에 따라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그 구별기준이 통일된 입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입법으로서 평등원칙의 위배의 소지
- 일곱째, 무과실책임에 관한 개별적 환경책임조항이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는 (단순)무과실책임조항인지 아니면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험책임조항인지 그 구별이 불명확

도입 가능성

- 과거에 환경책임법 입법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됨

구분	1989년 법안	1997년 법안	2000년 법안
법명	환경오염피해배상법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법	97년과 동일
목적	피해자 구제	피해자 구제	피해자 구제
대상 오염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진동, 악취, 지반침하, 지하수 고갈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환경정책기본법제3조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책임법리	무과실책임/연대책임, 입증책임전환	무과실책임/연대책임/소급책임, 입증책임전환	97년과 동일
보호 법의	제3자 인적·물적 손해배상책임 (휴업손해포함)	제3자 인적·물적 손해배상책임	97년과 동일
배상한도	-	한도설정	97년과 동일
보험가입	-	위험성이 높은 시설	97년과 동일
배상심의회	배상금 지급결정 및 각하 등 심의	-	-
정보제공 요구권	-	피해자에게 부여	97년과 동일
벌칙	진술거부, 문서 미제출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배상조치불이행: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 -정보제공 불이행시 500만원 과태료	97년과 동일

도입 가능성

- 200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 정책현안자료집』을 통해 환경 책임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
- 2005년 11월에 발표한 “국가 환경종합 계획”에 의하면 국가의 환경정책과 보험제도를 연계한 환경책임제도를 강화하고, 환경분쟁 관련 제도의 개선책으로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중장기과제로 추진
-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엄격한 환경책임법이 제정·시행될 것으로 예상